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20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제안 배경	4
2. 현행 제도와 개정안 비교	12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20
4.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 보호 강화	22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설치	32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절차 규정	39
7. 공공형 계절근로자업장의 지정	64
8. 벌칙 등 규정	69
9. 부칙	73
[참고자료]	7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미애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4. 1.
3. 회 부 일 : 2025. 4.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이러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경영체등은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마.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농어업경영체등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바. 농어업경영체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의8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1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제안 배경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5~2016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주요 연혁]

- (‘15.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시행[단기취업(C-4), 90일]
- (‘17.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본격 시행
- (‘19.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계절근로(E-8, 5개월) 체류자격 신설
- (‘20.3.)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 (‘22.1.) 국내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상설화
- (‘22.6.)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도입
- (‘25.1.) 체류기간 상한 연장(8개월)

자료: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국회의원 박지원·임미애, 대한변호사협회, 2025.1.2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국내 체류”와 “해외 입국”으로 구분됨.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의 경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등이며,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의 경우 계절근로 참여 신청일 기준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임.

농업 분야의 경우 시설원예·특작, 일반채소, 과수, 버섯, 인삼, 콩나물, 종묘재배, 곡물, 꽃감 가공 등 업무에 허용하고, 어업 분야의 경우 육상 가공·생산되는 해조류와 어패류 중 일부 수산물¹⁾ 등 계절성으로 단기간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에 허용되며, 고용기간은 최대 8개월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요]

구 분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대상	①시·군과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25~50세, 본국에서 농업에 종사), ②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사촌 이내의 친척(19세~55세) ③ 유학생 부모(55세 이하)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D-1(문화예술), D-2(유학), D-4(어학연수), F-1(방문동거), F-3(동반) 등 9개 체류자격
고용주	농어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배정심사협의회 승인을 받은 기초지자체(농협))	
고용 기간	최대 8개월	최소 1주일부터 최장 8개월까지
허용 인원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고용 허용 /공공형 사업자인 경우 최대 100명 이내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추가 허용(최대 14명)	
허용 업종	농업(축산분야 제외), 어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6.18.)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고용주를 모집하여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신청하면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가 연 2회 개최되어 지자체별 배정 인원 등을 최종 확정함.

1) 김 건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 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등

이후 지자체에서는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결혼이민자 친척을 초청, 고용주별로 계절근로자를 배치하고 근로조건 위반 및 외국인 이탈 여부 등을 관리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구분	내 용
쿼터 결정	① 참여농가 조사, 법무부에 도입신청(지자체)
	②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법무부 주관) 지자체별 총원배정(상·하반기 연 2회)
선발	① 송출국 지자체와 MOU 체결(지자체)
	② 인력모집·선발(송출국 지자체) ※ MOU 체결 이외의 방법으로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지자체가 직접 모집(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배정	① 농가 인력 배정(지자체)
	② 농가-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지자체 대행)
	③ 관할출입국관리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지자체)
입국·교육	① 사증(E-8) 발급(재외공관)
	② 입국(지자체 인솔)
	③ 교육 및 산재보험 가입 등(지자체)
능 가 고 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 5. 15.)

2024년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총 13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계절근로자 77,268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136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74,689명이 배정된 상황임.²⁾

2) 그 밖의 관련통계는 <참고1>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통계

[연도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

(단위 : 명)

연도	신 청		배 정		운 영		이 탈		
	지자체	인원수	지자체	인원수	지자체	인원수	지자체	인원수	이탈률
2017	24	2,243	23	1,547	21	1,085	6	18	1.7%
2018	44	4,229	44	3,655	42	2,824	18	100	3.5%
2019	54	5,267	54	4,211	50	3,497	8	57	1.6%
2020	60	6,076	58	5,806	25	223	0	0	0
2021	42	7,340	42	7,340	44	1,850	5	316	17.1%
2022	115	19,975	114	19,718	104	12,027	45	1,151	9.6%
2023	132	41,245	132	40,647	130	32,837	67	925	2.8%
2024	136	68,150	136	67,778	135	57,269	60	584	1.0%
2025	136	76,956	136	74,689	-	-	-	-	-
합계	-	231,481	-	225,391	-	111,612		3,151	2.8%

자료: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국회의원 박지원·임미애, 대한변호사협회, 2025.1.21.)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75,0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³⁾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1의2(장기체류자격)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자격 규정과 내부지침인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5. 단기취업 (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u>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u>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20의2. 계절근로 (E-8)	<u>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u>

2023년 2월부터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교육·체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음.⁴⁾

- 4) **법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게 대한 고용·노동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이에 사실상 지자체에서 외국 지자체와 체결한 MOU에서 정하는 내용을 토대로 계절근로자 선발, 송출,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므로, 근로자의 모집·송출·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또한, 브로커 등의 임금 갈취, 여권 압수 등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의 인원 배정상 불이익 외에 제재조치가 없는 등 제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⁵⁾

반면, 2004년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도입 당시 외국인력 규모는 79,000명⁶⁾으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와 유사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고용절차, 근로계약, 건강보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 상세 규정을 두고 도입이 이루어진 바 있음.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요]

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	2004년	2015년
근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법무부 지침
내용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제도운영 (인력도입)	고용부(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	법무부(지자체)
농업분야 도입업종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음식점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작물재배업, 어업 * 계절성으로 인한 단기 노동력 필요 분야

5)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국회의원 박지원·임미애, 대한변호사협회, 2025.1.21.)

6) 2024년 기준 165,000명(제조업 95,000명, 조선업 5,000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3,000명, 농·축산업 16,000명, 어업 10,000명)

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자격 /체류기간	E-9(비전문취업)/3년(1년 10개월 연장 가능) * 최대 9년 8개월 근로 가능(4년 10개월 +4년 10개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E-8(계절근로)/8개월 이내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D-1(문화예술), D-2(유학), D-4(어학연수), F-1(방문동거), F-3(동반) 등 총 9개 체류자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 5. 30.)

둘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프로그램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운영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국무총리에 대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에서의 노동력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간 협의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주무 중앙행정기관을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24. 11. 5).⁷⁾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농어촌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7) 관련 내용은 <참고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발췌

참고로,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9521호)」에서는 계절근로제 법제화와 관련하여 ①법무부장관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고, ②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두며, ③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음.

2. 현행 제도와 개정안 비교

분	내용	현행 법무부 지침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의	정의	자침에 정의 규정 두지 않음 ※출입국법 시행령 별표 1의2 20의2 계절근로(E-8)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조(정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기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별도의 정의 규정은 두지 않고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근거 조문에서 규정 ※ 제19조의5 ① 법무부장관은 <u>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u>(이하 “<u>계절근로자</u>”라 한다)에 대한 도입·체류 등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u>계절근로 프로그램</u>”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인권	인권 보호	인신매매 피해 식별 지표(이하 ‘지표’) 활용한 확인·점검 * 지침 서식, 5개 언어 (한, 영,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 (입국 전) 시증심사 시 MOU체결 방식 도입 근로자는 지표 제출(재외공관) - (체류 중) 공공형 근로자는 전수조사(지역농협, 2개월내) - (체류기간연장) 지표 제출 - (출국 전) 지표 활용 자체 조사 실시(지자체) * 조사결과 → 출입국관서 - (합동조사) 무단이탈, 위반건수, 신고접수 등 고려 실시(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합동)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포함내용에 인권침해 구제 추가 * 제5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u>인권침해 구제</u>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실태조사 포함내용에 인권보호 추가 * 제5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u>인권보호</u>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그 밖의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u>근무환경</u> 및 <u>인권보호 현황</u>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분	내용	현행 법무부 지침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10조(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지원) - 정부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을 위하여 지자체가 수행하는 각호 업무를 지원 - 그 내용에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인신매매·인권침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추가 * 제3호: <u>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u> * 제4호: <u>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u> 제10조의12 *준용규정 - 차별금지 * 「외고법」 제22조(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숙소	적정 주거환경 숙소 제공(의무) - 바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등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구비(냉·난방, 온수, 잠금장치, 취사도구, 침구류 등)하여 자택 안정시 사용 가능 근로계약 체결시 숙소시설 표 제공확인 * 주택유형, 침실·화장실 구비물품, 냉·난방, 채광·환기, 소방시설 등	제10조의12 *준용규정 - 기숙사의 제공 등 * 「외고법」 제22조2(기숙사의 제공 등) 기숙사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 준수 -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기숙사 구조·설비*, 장소, 주거환경 조성, 면적 등 * 8명이하/1실,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 냉·난방, 채광·환기, 화재관련 안전 장치 근로계약 체결시 사전 정보제공 * 구조·설비, 장소, 주거환경, 면적	-

분	내용	현행 법무부 지침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사전준비 등	업무협약 또는 협의	(업무협약 체결) 국내 지자체 ↔ 해외 지자체	제10조3 ① (정부간 협의) 농식품부 ↔ 송출국 정부 (노동행정 기관)	
	전문기관			제19조의5 ③~⑧ - 법무부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국내·외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 ※ 그 외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수행업무 - 계절근로자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원 - 사용자의 인권침해, 근로장소 이탈 여부·원인 등 조사
쿼터결정	내국인 구인	(구인주체) 지자체 (구인방법) 지자체 홈페이지(필수), 워크넷·도농인력중개플랫폼 등 (선택) * 구인 공고시 농가별 구인 수요 특정하지 않고, 지자체 단위로 구직자 일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 (구인기간) 1주 이상	제10조의2 (구인주체) 개별 농가 (구인방법) 농식품부 장관에 구인신청, 농식품부는 농가 구인조건 상담·지원, 구직자 직업소개* *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자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직업안정법」 제2조의2) (구인기간) 미규정	
	신청	사·군(참여농가 조사) → 출입국 관서 → 법무부		
	배정	배정심사협의회(법무부)	제7조의2 배정심사위원회(농식품부)	제19조의5 ②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구분	내용	현행 법무부 지침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주재) 법무부 출입국 정책단장 (구성) 과장(법무·농림·해수·고용·행안) (안건) 지자체별 배정 인원, 제도개선 등 논의	- (위원장) 국무총리 - (위원) 장관(법무·농림·해수·고용·행안) 사도지사 - (안건) ▲기본계획 중 계절근로자 관련 사항, ▲지원정책 심의·조정,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지정·취소, ▲공공형 사업장 지정요건, ▲취업 활동 기간 연장, ▲고용관리·보호에 필요한 사항 - (사무관) 안건사전 심의	- 법무부장관 소속 -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자문 -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령에 위임
선발	구직자명부 작성 (근로자 선발)	(외국 기초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방식) 국내 지자체 ↔ 해외 지자체 - 농업종사 1년이상, 25세~50세 * 근로자모집, 선정·송출 등 중요업무 사인에 위임 금지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친척 초청 방식) 국내 자체 ↔ 결혼 이민자 - 19세~55세 (유학생의 부모초청 방식) - 만 55세 이하	제10조의3 ②~④ 농식품부 ↔ 송출국 정부 (노동행정 관장) - 적성검사 및 한국어능력 평가 시험 - 고용부 장관에 외교법 제7조제2항 시험(고용허가 구직자 명부작성을 위한 한국어능력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평가 받은자에 대하여 추천 의뢰 가능 - 적성검사 한국어 시험에 수수료 징수 가능 - 적성검사 한국어 시험 실시기관 선정·취소·평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제19조의5 ⑩ 제3자 개입 금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계절근로자 선발, 알선 그 밖에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됨
배정	농가 배치	※ 도입절차 · 쿼터결정 · 근로자모집&구직명부 (해외 지자체) · 농가배치(지자체) · 근로계약(지자체가 전달)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출입국관서) · 사증발급(재외공관)	제10조의4 - (농가 → 농식품부) 근로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신청 및 직업소개 받고도 인력채용 못한 때 - 근로허가 신청 유효기간 3개월, 2회에 한해 효력 연장 가능	

구분	내용	현행 법무부 지침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입국(지자체 인솔)	- (농식품부 장관 → 농가)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 적격자 추천 - (농가) 적격자 선정 - (농식품부 장관 → 농가) 근로허가서 발급 - 선발·알선에 제3자 개입 금지	
	근로 계약	지자체가 전달, 근로 계약 체결 - 지침 서식(표준근로 계약서)	제10조의5 ①,②,⑤ 지자체 대행, 근로계약 체결·갱신 - 표준근로계약 서식(부령으로 위임)	
	사증 발급 인정	사증발급인정서(지자체 → 출입국 관서)		
입국	사증	사증발급(근로자 ↔ 재외공관)		
	입국	지자체 인솔		
	교육	근로자·고용주 교육 실시 - (주관) 지자체 - (내용) ^{공통} 인권침해 예방, 안전교육, 임금 지급 관련사항, 통장·여권소지 사항, 근무처 변경 등, ^{고용주} 지침상 준수 사항, 다문화 이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근로자 고충·위급사항 발생시 대처방법, 신고요령(성폭력·임금채불·산재 등) ※ 필요 교육시간 내용 없음	제10조의12 *준용규정 근로자 입국후 취업교육 의무 -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고용부 지정 취업교육기관 * 농업분야: 농협중앙회 - (내용) 부령으로 위임(기초기능, 고용허가제도, 16시간 이상) 사용자 교육 의무(고용허가 최초로 받은자) - (내용) 부령으로 위임(고용허가제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등, 총6시간)	
	보험		제10조의8 ○ 가입대상 보험(제1항, 제2항)	

구분	내용	현행 법무부 지침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고용주 산재보험 또는 농업 인안전보험 근로자 여행자 보험	고용주 보증보험(임금체불) 근로자 상해보험, 농업 인안전보험 ○ 경영체 등은 보험 료·신탁금 매월 납 부·위탁 - 국가는 보험료 지원 가능(제3항) ○ 보험 가입방법·내용· 관리·지급, 보험료 지원 절차·방법 대 통령령에 위임(제4항)	
근로 및 체류	외국 인 등록	외국인등록(근로자↔ 출입국관서)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임금	- 최저임금 이상 - 월1회 이상 통장에 직접 지급 - 지자체는 임금지급 현황(제3자 갈취 포함) 정기적으로 확인 - 숙식비 공제시 상 한 준수 * 주거 유형, 숙박·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월 임금의 20% ~ 8%		
	체류 기간 연장	근로계약 갱신 시, 8 개월 이내 잔여기간 - 체류기간만료 40일~60 일 전 신청 * 허가기관: 출입국 관서	제10조의5 ③, 제10조 의6 - 당사자간 합의에 따 라 근로계약 갱신 가능 - 근로계약 체결·갱신 시 체류기간 및 취업활 동기간 연장 가능 ※ 연장가능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허가기관: 농림·해수 장관	
	근무 처 변경	고용주 귀책사유인 경우	제10조의9 - 휴·폐업, 사용자의	

분	내용	현행 법무부 지침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허가기관: 출입국 관서	고용 취소, 근로조 건 위반, 체불임금 발생, 인권침해 있 는 경우 * 허가기관: 농림,해수 장관	
	재입 국 추천	시·군(희망농가) → 출입국 관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고용주) 인권침해, 출입국법 위반 등 없는 자 - (근로자) 계약일수 75% 이상 근로	제10조의5 ④, 제10조 의7 출국 전 고용주가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를 신청한 계절근로자 *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 재취업 가능 신청 절차 부령으로 위임	
귀 국	귀국 전 이행 사항		제10조의10 귀국 전에 고용주는 임 금 등 금품 관계 청산 의무	
운 영 형 태	공공 형 계절 근로	농식품부가 대상 농 협 선정(지역농협·조 공법인·중앙회 시군지 부 등), 법무부로 통보 *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지원 에 관한 별도 사업 지침 운용	제10조의11 - 요건 갖춘 사업장(부령 으로 위임)을 공공형 사업장으로 지정 * 지정권자: 농림,해수 장관 - 예산 범위내 필요 한 비용 전부·일부 지원 가능 -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대통령령에 위임	
사 무 처 리	위임 · 위탁	중요업무* 위임 금지 * 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제23조 시·도지사, 시·군·구 장의 업무 위탁 근거 추가	
제 재 조 치	벌칙 등	- 고용주 및 지자체에 벌점 부과, 누적벌점 에 따라 배정 제한 * (고용주) 1~2년 배 정 제한	제25조 - 1년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자 선발·알선·근 로조건에 개입, 귀국	제94조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 선발·알선, 그밖 에 채용에 개입

구분	내용	현행 법무부 지침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자자체) 신청인원 50%이내 삭감, 1년간 배정 제한 - 침해유형에 따라 해당기관 통보 * (성폭력) 해바라기센터, 경찰관서, (임금·산재) 고용센터 등	전 필요조치 미이행 - 5백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보증보험·상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미가입자, 근무처 변경 방해한 자 제26조 - 행위자 외 법인 등 양벌규정 *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개인에 대하여 벌금	
체류관리	정보통신망			제19조의5 ⑨ 정보통신망 설치·운영 - 계절근로 프로그램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설치·운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5.30.)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도입·체류 등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는 유사 입법례(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정의)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정의를 참고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현행법 제2조제3호⁸⁾에서 이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경영기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을 열거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농어업고용인력 인권보호 강화

개정안은 ①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②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③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 ----- ----- ----- -----.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1. ~ 4. (현행과 같음)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u>근무환경 개선</u>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 <u>근무환경 개선</u> , <u>인권침해 구제</u> -----
6. 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⑧ (생략)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u>근무환경</u>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u>실태</u>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략)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u>농어업고용인력</u>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근무환경, 인권보호</u>----- 6. ----- -----<u>근무환경</u> 및 <u>인권보호 현황</u> 등 실태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 -----<u>농어업고용인력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현행	개정안
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u><신 설></u> <u><신 설></u> <u>3.</u>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u> <u>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u> <u>5. (현행 제3호와 같음)</u> ④ (현행과 같음)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및 정부의 지원 사항에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함.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안 제3항제3호)은 현행법 제10조제3항제2호와 시행령 제5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개정의 실익이 낮음.

(2)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관련 개정 조항은 현장 의견에 따라 수용 가능함.

나.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어업에서의 이주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등이 보도됨에 따라 2020년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모니터링>, 2022년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 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2023~2024년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 모집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함.

이 과정에서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주에 의한 여권 등 신분증과 통장 압류, 인력송출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임금 착취, 임금 체불, 폭언·폭행 등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었음.⁹⁾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지 브로커와의 관계에서 협상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 신분증 압류 등의 물리적 통제, 이탈방지 보증금 및 친인척 연대보장 등 경제적 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¹⁰⁾ 피해

9) 전라남도에서 2024년 1월 도내 19개 시군, 계절근로자 2,539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권·통장 압수 23건, 임금착취 59건, 임금체불 6건, 폭언·폭행 1건의 사례를 확인함(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의원 박지원·임미애, 대한변호사협회, 2025.1.21.).

10)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¹¹⁾

이에 개정안은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보호 실태 조사, 지자체가 실시하는 인신매매 실태조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함.

(1) 기본계획에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 포함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¹²⁾

기본계획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안은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법 제5조제1항제5호)에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 1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2024. 11. 5.

- 12) 다만, 동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¹³⁾

개정안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이와 같은 의무가 우선적,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인권침해 구제”는 사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인권침해의 예방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실태조사 내용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

현행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조사 대상은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임.

13) 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농림축산식품부(2024년)와 해양수산부(2025년)는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함.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주요 조사 항목]

구 분	주요항목	상세 조사내용
경영체 대상	기초 현황, 생산 현황	기초현황 소재지, 영농경력, 재배면적 등
	노동력 투입 현황·계획	자가인력, 고용인력
	고용인력 관리 현황	평균연령, 인건비, 고용경로, 애로사항, 노무관리 등
고용인력 대상	고용형태·조건	사업주 유형, 종사상 지위, 근로조건(사회보험, 임금 등)
	근로환경 인식	농업분야 지속 근로 의향, 사업장 선택 기준 등
	거주 환경	숙소 제공 여부·방식, 주거지 형태, 동거인 수 등
	교육·훈련	농업 교육·훈련 경험·만족도, 교육 필요 분야, 향후 계획

자료: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보고서(2024.12.)

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 내용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인권침해 경험 여부, 피해신고 및 처리 등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으로 무단이탈, 위반건수, 신고 접수 등을 고려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제6조제2항제6호를 “그 밖에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항 제5호에 이미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실태가 포함되므로,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3) 정부의 지자체 실태조사 등 업무 지원

현행법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확대를 위하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자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교육·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정부가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부 지침(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는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숙소, 근로조건 등의 고용주 준수사항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고충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언어소통 도우미 등을 배치하여야 함.

[근로조건·인권 보호 관련 준수사항]

대 상	준 수 사 항
고용주	·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산재보험 의무 가입(농어업인 안전보험 대체 가능)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월 1회 이상 일정 날짜, 임금 전액, 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현금 지급 시 반드시 '임금 수령증' 및 '임금 명세서') ·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 계약된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준수 ·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 고용주 또는 제3조 보관 금지(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라 처벌 대상) · 폭력, 폭행, 성희롱,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지자체	· 적합 숙소 제공 여부 점검 ·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확인 ·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정상 지급 확인 · 계절근로자의 임금 통장(현금카드)·여권·외국인등록증 직접 소지 여부 확인 · 정기적인 고충 상담을 통한 이탈 방지 노력 ·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초 법질서, 상호문화의 이해 등)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운영(의무 배치 지자체에 한함)
-----	---

자료: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재구성

그러나 지자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고용주 준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10조제1항은 이 조에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범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다른 조문¹⁵⁾에서도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범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포함되므로 동 조문으로 한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임.

둘째, 현행법과 시행령 제5조¹⁶⁾에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15) 예시: 법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

16) 시행령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통역, 고용·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는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지자체 교육 현황]

대상	교육 내용
공통	인권침해 예방(성희롱 방지 교육 등 포함) 교육 재해예방 등을 위한 작업 안전 교육 임금명세서 교부·월 임금 지급액 및 숙식비 공제 관련 내용 임금통장(현금카드)·여권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소지(제3자 보관 금지)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근무처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 수칙 등
농가 고용주	계절근로자 지침에 따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다문화 이해 출입국관리법(근무처 변경 허가 등),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고충사항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성폭력·임금체불·산재발생·인권침해 시 신고 요령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 5. 30.)

셋째, 개정안 제10조제3항제4호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0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그 밖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의 대상도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정책,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요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배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된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배정심사위원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배정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행정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방향¹⁷⁾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2) 법무부

개정안과 동시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 5¹⁸⁾의 계절근로 주요 정책 사항 논의를 위한 법무부 소속 정책협의회 구성 조항과 중복된다는 의견임.

(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24.6.,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다양한 외국인 관련 위원회¹⁹⁾를 일원화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 고용허가 규모 결정시 계절근로 규모를 통합적으로 결정하기로 한바, 별도 위원회 신설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임.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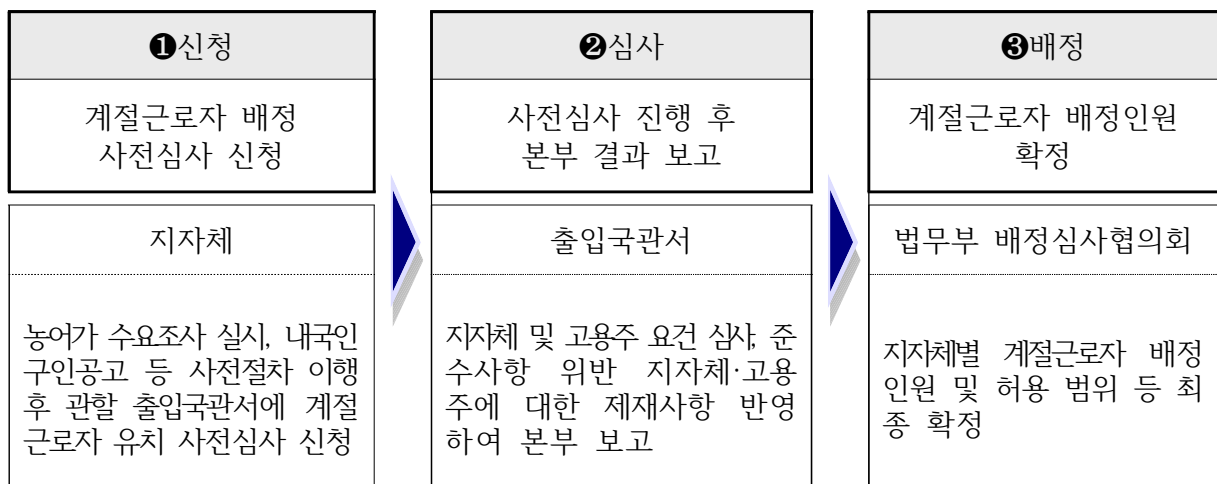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9) 외국인정책위원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지원법)

나. 검토의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에서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 출입국 관서에 신청하면, 출입국관서에서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참고하여 연 2회(다음연도 상반기 배정 12월, 당해연도 하반기 배정 6월) 개최되는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배정인원을 확정하는 구조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및 심사 절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 5. 15.)

배정심사협의회는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및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최종 확정, 부처별 제도개선 현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한편,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도입 업종·규모,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지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²⁰⁾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은 동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이에 개정안은 현재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배정심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²¹⁾ 고용허가제와 같이 계절근로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절근로자 관련 기본계획,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21) 다만,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는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나, 개정안의 배정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비교]

구분	법무부 지침	외국인력 합리적 관리방안 ('24.6. 관계부처 합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계절근로 배정심사협 의회	외국인력통합 정책협의회	외국인정책 위원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위원장	법무부 출입국정책 단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법무부령 위임
위원 구성	관계부처 과장 - 법무부, 고 용부, 농식품 부, 해수부, 행안부	12개 관계부처 차관 - 기재부, 외교 부, 법무부, 산 자부, 고용부, 중기부, 농식품 부, 해수부 등	15개 관계부 처 장관	· 관계부처 장관 - 법무부, 고용부, 농식 품부, 해수부, 행안부 · 시·도지사 ·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안전	지자체별 계절근로 배정규모, 공공형 계절근로사 업자 확정, 제도개선 사항 등	'25년 비전문인력도입 방안 (계절근로, 고용허가, 선원취업) 등	외국인정책 에 관한 주요사항	· 기본계획 중 외국 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정책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 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송출국가") 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장 지정 요건 및 선정에 관 한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국인 계 절근로자 고용관리 와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자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025. 5. 30.) 재구성

다만, 위원회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심의 사항 중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4년 6월 정부에서는 부처별(계절근로-법무부, 고용허가-고용부, 선원취업-해수부)로 관리하던 비전문 외국인력 비자별 도입규모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총량적으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²²⁾

참고로, 이에 따라 총량적으로 결정된 2025년 농업 분야 비자별 배정 규모는 다음 표와 같음.

['25년 농업 분야 비자별 배정 규모]

(단위: 명)

구분	전문인력* (E-7-1)	숙련기능인력 (E-7-4)	계절근로 (E-8)	고용허가 (E-9,H-2)
배정규모	별도의 규모제한 없음	1,600	68,911	10,000

주: * 특정활동 內 전문인력(E-7-1)의 농림어업관리자·생명과학전문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 5. 30.)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도입 규모 등은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의 배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타 산업 및 내·외국인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둘째,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무부 소관)」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 및 이민 분야 최상위 심의기구로 계절근로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22) <참고3>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음.²³⁾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도입·관리업무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중앙-지방 계절근로 통합 인력관리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제 기본방향 및 지원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배정심사위원회는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3)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절차 규정

개정안은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 근로계약, 계절근로기간 연장, 재입국추천, 보증보험 등의 가입, 근무처 변경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근로허가·체류·귀국 등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이하 “농어업경영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배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계절근로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성 검사 및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

현행	개정안
	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계절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10조의4(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 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농어업경영체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근로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등에게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농어업경영체등에게는 지체 없이 근로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5(근로계약) ① 농어업경영체등이 제10조의4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등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4에 따라 근로허가를 받은 농어업경영체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0조의7에 따라 재입국추천으로 근로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업경영체등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0조의6(계절근로기간 연장)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설>	제10조의7(재입국추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서 제10조의6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농어업경영체등이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8(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농어업경영체등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0조의9(근무처 변경)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휴업, 폐업, 사용자 등의 고용허가의 취소 2. 농어업경영체등의 근로조건 위반, 체불임금발생 또는 인권침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이 인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제10조의3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신설>	제10조의10(귀국에 필요한 조치) 농어업경영체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의12(다른 법률의 준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가. 종합 검토

(1) 관계 부처 등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관련 신설안은 현행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법무부 지침)과 상이하고, 법무부 소관의 기능·역할이 많으므로, 동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법무부>

농어업분야 인력 수요 특성상 신속, 적기 도입을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제에 연중 상시근로에 맞게 설계된 고용허가제(E-9) 도입절차를 적용할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란 초래로 도입 절차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임.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제 운영 절차를 현행법에 법제화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외국인고용법 조문 비교]

개 정 안	「외국인고용법」 참고조문
제10조의2(내국인 구인 노력)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10조의3(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 추천 의뢰 가능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개 정 안	「외국인고용법」 참고조문
제10조의4(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 ※근로허가 신청 효력 2회 연장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근로허가 신청 효력 1회 연장
제10조의5(근로계약) ※시·군·구의 장 대행	제9조(근로계약)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
제10조의6(계절근로기간 연장) ※기간 미규정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한 차례 2년 미만 기간 연장
제10조의7(재입국추천)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0조의8(보증보험 등의 가입)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국가의 보험료 지원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제24조(출국만기보험·신탁)
제10조의9(근무처 변경)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10조의10(귀국에 필요한 조치)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제10조의12(다른 법률의 준용) 외교법 제11조, 제1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제22조(차별 금지)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주: 참고표시는 외국인고용법과 차이점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서는 계절근로제의 특성에 맞는 제도운영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고용허가제에서는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반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의 경우 최대 8개월까지 단기체류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절근로자의 심사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절차를 도입할 경우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 및 지자체의 적시 인력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의 차이점]

제도	계절근로제	고용허가제
근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법무부 지침*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운영방식 △도입신청·배정 요건 및 절차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교육·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내용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음식점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제도운영 (인력도입)	법무부(지자체)	고용부(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
농업분야 도입업종	△작물재배업 * 계절성으로 인한 단기 노동력 필요 분야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도입대상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농축산업 송출지정 국가*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시험 및 건강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 구직 등록한 자 * 12개국: 몽골,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으로 본국에서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 ②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아내의 친척으로서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계절근로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체류자격 /체류기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E-9(비전문취업)/3년 (1년 10개월 연장 가능) * 최대 9년 8개월 근로 가능(4년 10개월 +4년 10개월)
	E-8(계절근로)/8개월 이내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D-1(문화예술), D-2(유학), D-4(어학연수), F-1(방문동거), F-3(동반) 등 총 9개 체류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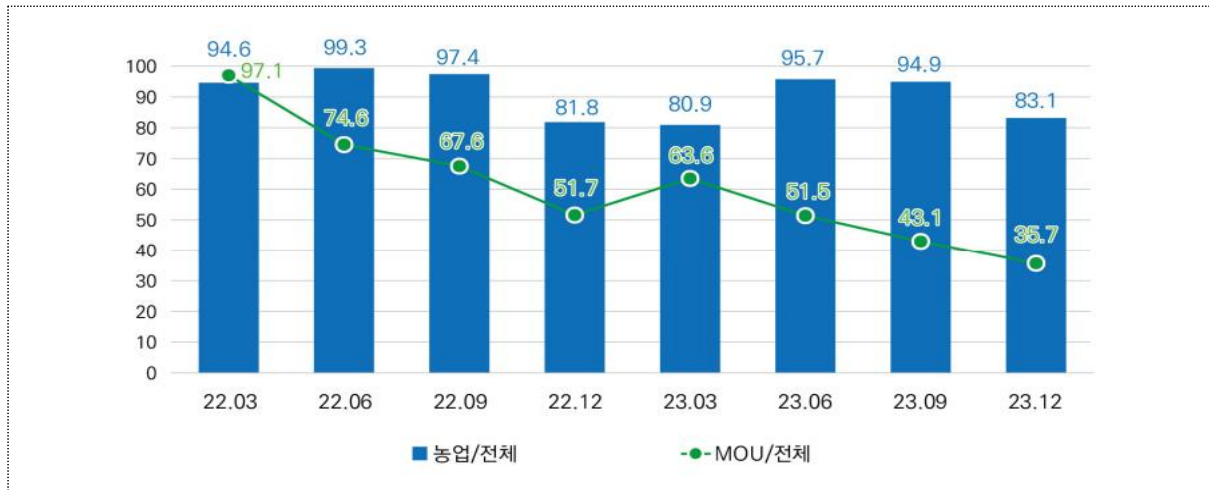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 5. 30.)

또한,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인척 초청 방식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함.

MOU 방식보다는 친인척 초청 방식의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낮아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는 점(2023년말 기준 MOU외 방식 64%)을 고려할 때, 동 방식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분기별 계절근로자 도입분야 및 도입방식 추이(2022-2023)]

(단위: %)



자료: 이민정책연구원, 계절근로자 행정통계의 이해와 추이 분석(2021~2023), 2024.4.

둘째, 제도의 주무부처 이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농업분야 내·외국인 공급 규모를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속도에 비해 내국인 인력 공급은 정체 상태로 장기적으로 외국 인력 공급이 농어촌 인력 공급 정책의 주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내·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식품부 및 해수부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농업분야 내·외국인 연도별 지원 규모]

(단위: 만명)



자료: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2025.4.)

또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와 같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법령을 통해 외국인력의 고용범위 및 고용절차 등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음.²⁴⁾

반면, 현재 법무부 지침과 지자체의 MOU에 따라 계절근로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를 법무부(지자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및 제도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참고로, '25년 5월 기준 전국 106개 기초지자체에서 MOU를 체결하였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이라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게 되므로 농어업고용인력의 통합적인 관리에는 법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계 부처간 협의를 비롯하여 이관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4)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및 「외국인선원 관리지침(해수부 고시)」

셋째, 개정안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과 개정안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1호)」을 살펴보면, 인력도입 방식, 계절근로자 관리 주체 등에서 권한 배분 방식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함.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계절근로제 운영 체계]

구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주체	제도운영-농식품부, 해수부장관	제도시행-법무부장관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배정심사위원회 -계절근로 기본계획, 업종 및 도입규모 결정	법무부 소속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계절근로 기본계획, 업종 및 도입규모 등 자문
인력도입	농식품부, 해수부와 송출국 정부 협의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MOU
계절근로자 선발·관리	농식품부 및 해수부장관	법무부장관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자료: 의안원문 재구성

따라서 두 법률안 간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내국인 구인 노력(안 제10조의2)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은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또는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관계 부처 등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계절근로제는 내국인 구인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허가 대비 내국인 구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가 대행하는 방법으로 운영 중으로, 개별농가(‘25년 배정: 19,250농가)에 구인의무를 부과할 경우 농가부담 증가 및 제도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직업소개²⁵⁾는 전국의 고용센터(고용부)가 농업 분야 포함한 내국인 고용 및 직업소개 기능을 수행 중이므로 내국인 구인은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식품부에는 직업소개를 전담할 적합한 소속기관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²⁶⁾

25)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6) 고용허가제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제도 운용

<법무부>

내국인 구인노력을 놓어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계절근로제 신청을 기피할 수 있고 신청 소요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2) 검토의견

개정안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현재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홈페이지(의무) 및 고용부 워크넷,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등(선택)을 통해 1주 이상 공고하고 있으며, 구인 공고시 농가별 구인 수요를 특정하지 않고 지자체 단위로 일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는 소규모·영세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에 따라 개별 농가에서 구인 노력을 입증하도록 하는 경우 제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안 제10조의3)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안 제10조의4)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 시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내국인 구인 신청 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농어업경영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적격자를 추천하여 근로허가를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3(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배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계절근로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성 검사 및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계절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0조의4(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 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농어업경영체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근로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근로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등에게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농어업경영체등에게는 지체 없이 근로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계 부처 등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계절근로제는 지자체별 인력 필요시기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부간 협약으로 변경시 지자체별 수요시기를 반영한 적기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허가에 적용하는 적성검사 및 한국어능력 평가, 근로허가 절차를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에 게 적용하는 경우 원활한 구직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법무부>

근로자 이탈 등 문제로 인한 송출 제한에 따른 국가간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간 협약 방식이 아닌 국내외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방식으로 계절근로제 운영 중으로, 업무 주체 변경 시 기존 협약 변경에 따른 우리 정부 및 지자체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

고용부장관에게 한국어능력시험 일정기준 이상의 구직자를 추천의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준비한 외국인력에 대한 신뢰보호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2) 검토의견

MOU 체결 업무를 기초 지자체에서 담당함에 따라 지자체별 역량 및 인력의 한계로 계절근로자 모집과 송출을 사인·단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브로커)의 개입 소지가 발생함.

개정안은 구직자 명부의 작성 및 구직자 명부 중 적격자 추천 등 모집 과정을 지자체별 MOU에서 농식품부·해수부와 송출국 정부(노동행정기관)간 협의로 변경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완화하는 데 의의가 있음.

다만, 현재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 시험은 고용허가제에만 적용되는 사항인데, 개정안처럼 최대 8개월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계절근로자에 게도 새롭게 추가할 경우 과도한 심사 절차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임.²⁷⁾

라. 근로계약(안 제10조의5), 계절근로기간 연장(안 제10조의6), 재입국추천(안 제10조의7) 및 근무처 변경(안 제10조의9)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함. 다만,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별도의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없음.

근로계약 갱신 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연장된 기간이 끝나더라도 농어업경영체등이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 1개월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농어업경영체등의 근로조건 위반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자는 농식품부장관 등에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5(근로계약) ① 농어업경영체등이 제10조의4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등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4에 따라 근로허가를 받은 농어업경영체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27)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어 시험 준비기간은 평균 9.7개월로 나타났으며, 빈도별로는 6개월 미만 61.2%, 1년 이하 23.3%, 1~2년 11.8%, 2년 이상 3.85%임. 한국어 시험 준비상의 어려움으로는 교육 기간의 장기화 27.4%, 한국어 습득 어려움 27.4%, 비용 23.0%, 교육기관 접근성 22.2% 순임(이성순·김연홍,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2024).

현행	개정안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0조의7에 따라 재입국추천으로 근로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업경영체등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0조의6(계절근로기간 연장)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설>	제10조의7(재입국추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서 제10조의6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농어업경영체등이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0조의9(근무처 변경)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휴업, 폐업, 사용자 등의 고용허가의 취소 2. 농어업경영체등의 근로조건 위반, 체불임금발생 또는 인권침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이 인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제10조의3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1) 관계 부처 등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계절근로 최대 체류는 8개월까지 가능하나 개정안은 연장가능한 상한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법무부 계절근로 지침과 상이함.

출국 후 1개월 경과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8개월 이내 단기 체류만 가능한 계절근로제와 부합하지 않음.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등 고용주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근무처 변경을 출입국관서가 허가해주고 있어 이를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도 운영 절차상 맞지 않음.

<법무부>

현재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상 표준근로계약서 이용 근로계약 체결 및 제공 의무, 최대 8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추천, 근무처변경 제도를 운영 중으로 별도 신설이 불필요함.

(2)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함.

현 지침에 따른 때에도 사증(비자) 발급 신청시 고용주는 지자체에 근무방식·조건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모범적인 고용주의 경우 성실한 계절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추천을 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귀책사유 발생 시 출입국관서에서 근무처 변경을 허용할 수 있음.

다만, 현행 제도는 총 체류기간 8개월 이내에서 잔여기간 동안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바, 개정안과 같이 체류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고용허가제와 달리 간소화된 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제도를 악용하여 계속 체류할 소지가 있고, 기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제도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보임.

마. 보증보험 등의 가입(안 제10조의8) 및 귀국에 필요한 조치(안 제10조의10)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해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농어업경영체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귀국하기 전 임금 등 금품 관계를 청산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8(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현행	개정안
	<u>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② <u>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③ <u>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농어업경영체등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 ④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u>제10조의10(귀국에 필요한 조치) 농어업경영체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계절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률적용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일괄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제2항의 농어업인안전보험²⁸⁾은 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인 농가가 가입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2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6조(피보험자) ①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제3항은 고용허가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한 출국만기보험·신탁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²⁹⁾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보험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³⁰⁾

제3항 후단의 보험료 보조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어 수익자부담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³¹⁾에 국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2) 검토의견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8,062명, 피해액은 411억 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3,031명(37.6%), 133억 5,600만원(32.4%)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전업종에서 체불을 경험한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의 10.7%(금액 기준 7.7%)임을 감안하면 내·외국인 구성비 측면에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체불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³²⁾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30)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정기 납부금, (신탁금) 신탁계약 등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3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임금채불 보증보험(농어업경영체 등이 가입), 농어업안전보험,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고, 농어업경영체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귀국하기 전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임금채불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임금채불에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이 의무화되는 경우 소액의 임금채불 피해³³⁾에 대해서는 권리구제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현 지침에 따를 때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데, 산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안전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함으로써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산재보험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개요]

구분	산재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보장 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간병급여금, 휴업(입원)급여금, 재활(고도장해)급여금, 재활(재해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등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
보험 기간	사업 시작일 ~ 사업 폐업 또는 끝난 날	1년 만기(일시납)	1년 만기(일시납)

32) 중앙일보, [단독] 귀한 일손인데... 농어촌 임금채불, 10명 중 4명이 외국인, 2024. 9. 25.

33)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에 적용되는 임금채불 보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400만원임.

구분	산재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산재형)	650,040원 / 연간	181,900원 / 연간	(산재1형) 266,300원 / 연간 (산재2형) 331,300원 / 연간
보험료 지원	-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피보험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자체별 지원비율(0-50%) 다름
운영사	근로복지공단	NH농협생명	수협중앙회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6.18.)

다만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일원화 측면에서 이를 동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바. 다른 법률의 준용(안 제10조의12)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일부 조문을 준용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12(다른 법률의 준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 법률 제10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5호에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 지원 근거가 있어 개정실익이 낮음.

농식품부는 '22년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 중으로 기숙사 제공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출입국관리법」에 일괄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기숙사의 제공 조문을 준용하고 있음.

[외국인고용법 준용 대상 법률]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³⁴⁾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기숙사 설비(8명이하/1실,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 냉·난방, 채광·환기, 화재관련 안전 장치), 장소(소음진동이 심한 장소 금지 등), 면적(2.5㎡ 이상) 등 규정

현행 지침에 따를 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적정 숙소 제공과 근로계약 체결 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숙소 시설표 제공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다만,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계절근로자는 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기보다는 법제화 시 이를 동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추진현황('25.5월 기준)]

구 분		대상지역		사업비	현 황
농식품부 건립 기숙사	1차('22~'23) 10개소	거점형	해남, 영양	개소당 24억원	6개소 준공
		마을형	부여, 청양,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개소당 15억원	
	2차('24~'26) 10개소	거점형	김천, 보은	개소당 24억원	5개소 설계·건축중
		마을형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개소당 15억원	
	3차('25~'27) 10개소	유형 통합	충주, 고창, 군산, 남원, 영주, 밀양, 청도, 영천2, 함양	개소당 24억원	사전절차 이행중
지자체 건립 기숙사 ('26년까지 18개소)		경기 4(양주, 연천, 파주, 포천), 강원 2(철원, 인제), 충북 2(괴산, 제천), 충남 1(논산), 전북 3(순창, 정읍, 임실), 전남 4(함평 2개소 운영·1개소 건축 중, 장성1), 경남 2(하동1, 함양1)		건립방식(신축·리모델링),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규모 상이	11개소 운영 7개소 건축 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6.18.)

7.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장의 지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11(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대상을 장소적 개념의 “사업장”으로 하기보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개념으로 변경하고, 지정취소 요건은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협중앙회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시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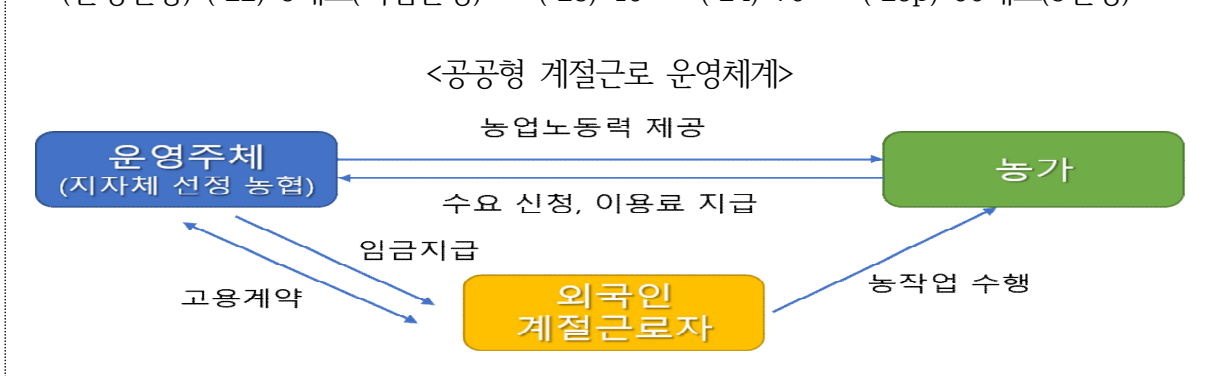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송출국과 MOU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면,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농협)이 계절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가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임.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기초지자체가 선정한 기관을 공공형 사업자로 승인하는 경우 최대 100명 이내에서 고용이 가능함.

[공공형 계절근로 개요]

- (운영주체) 지자체에서 선정한 농협(중앙화·조공법인·지역농협)
- (운영방식) 지자체가 송출국과 MOU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협이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 제공
 - * 「농협법」 제57조(사업)제1항제2호(경제사업)아목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근로자는 공동숙식으로 관리, 내·외국인 작업반장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작업 현장에 투입(작업반장이 근로자 지휘·감독)
 - ※ 농협이 일(日)단위로 농가가 농협에 사전 요청한 농작업 이행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기에 근로자가 파견받은 사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과 다름
- (운영현황) ('22) 5개소(시범운영) → ('23) 19 → ('24) 70 → ('25p) 90개소(3천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 5. 15.)

동 제도에 따르면 장기간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 농가도 일(日) 단위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농가의 외

국민 계절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의사소통, 숙소 등), 계절근로자의 사업장이탈이나 임금착취 문제 등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³⁵⁾

[(일반) 계절근로제와 공공형 계절근로제 비교]

구 분	(일반) 계절근로제	공공형 계절근로제
모집	지자체	
체류기간	8개월 이내	
고용주체	개별 농가	농협
근로장소	고용된 개별 농가의 작업장	농작업 신청한 농가의 작업장 (일 단위 수시배정)
숙소제공	개별 농가에서 제공	농협이 제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2025. 6. 20.)

농식품부에서는 '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개소당 9,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씩 총 90억원(국비 45/지방비 45)을 지원할 예정이나, 농협이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35시간 이상을 보장하여 매월 일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함에 따라 유희인력 발생 시 인건비 손실 부담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³⁶⁾

이에 개정안은 사업의 체계적·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법적 근거와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임.

35) 어업 분야 공공형 계절근로는 '25년 시범 도입(2개소, 예산 1억원)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2023. 11.

첫째,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할 때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³⁷⁾

특히, 계절근로자 모집·송출 과정을 사인(私人)에게 위임함에 따라 불법 브로커 개입에 따른 착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³⁸⁾ 운영 주체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는 계절근로자 운영실적, 운영 주체의 적정성, 공동숙소 구비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고 있음.

[사업자 선정]

- (주체) 농식품부(1차)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최종)
- (일정) 매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공고 및 신청접수(10월), 심사자료 작성 및 실태조사(11월), 배정심사협의회 개최(12월)
- (기준) 계절근로자 운영실적, 운영 주체의 적정성, 참여 농가 모집, 공동숙소 구비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자료: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본계획 프로그램

둘째, 침익적 행정행위인 지정취소의 경우 법률에서 직접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청문을 필요적 절차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³⁹⁾

37) 참고 입법례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38)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국회의원 박지원·임미애, 대한변호사협회, 2025.1.21.)

39) 참고 입법례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셋째, 개정안 제3항에서는 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지정요건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대통령령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8. 벌칙 등 규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등에 개입한 자,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등에 대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및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u>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안 제10조의4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10조의10(귀국에 필요한 조치) 농어업경영체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의</u>----- ----- -----. <u>제7장 벌칙</u>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u>

현행	개정안
<u>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안 제10조의8(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임금 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u>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u>안 제10조의9(근무처 변경)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u> <u><신설></u>	<u>채용 및 근로조건 조정에 개입한 자</u> <u>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1. 제10조의8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상해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 <u>2. 제10조의9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방해한 자</u> <u>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지자체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벌칙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일괄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검토의견

(1)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가 현행법상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사업(제11조),⁴⁰⁾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제14조)⁴¹⁾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2) 벌칙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등에 개입한 자, ②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④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과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

40) 제11조(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1)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정형의 상한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개정안 및 고용허가제에 따른 형사처벌 비교]

구 분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①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및 근로조건 조정에 개입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
③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좌동	-
④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료: 개정안 및 법률 재구성

다만,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는 개정안과 같이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등 개입 금지를 규정
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
므로,⁴²⁾ 해당 법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하여 중복 규정을 방지할 필요
가 있음.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등에 개입한 자의 경우, 의무
조항(안 제10조의4제6항)에서는 근로조건 조정과 관련한 의무가 없으
므로, 처벌 대상에서도 근로조건 조정 개입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
하고는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11의2. 제19조의5제10항에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9. 부칙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정하고 있음.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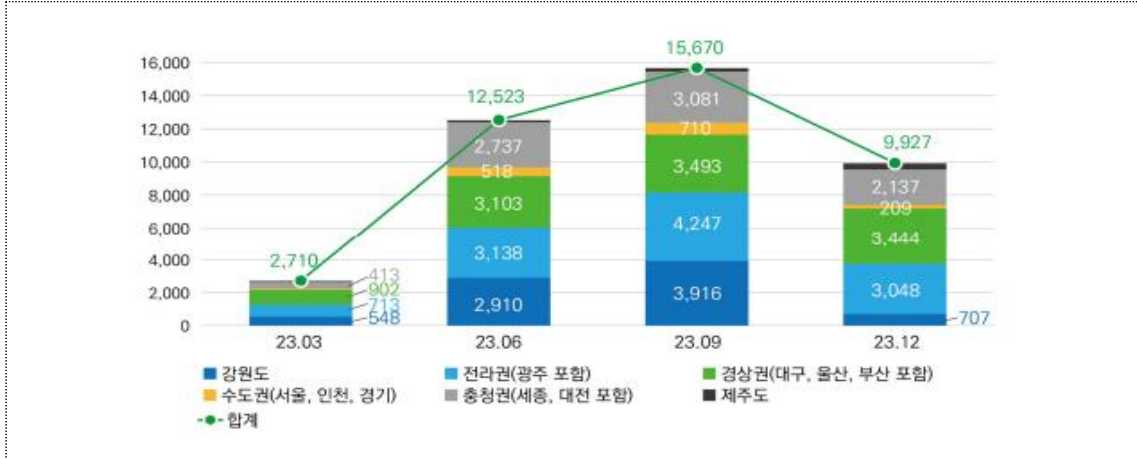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모집 요건, 사용자의 의무 등이 신설될 경우, 이미 체류 중이거나 고용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신뢰보호 측면에서 동 법 시행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참 고 자 료

참고1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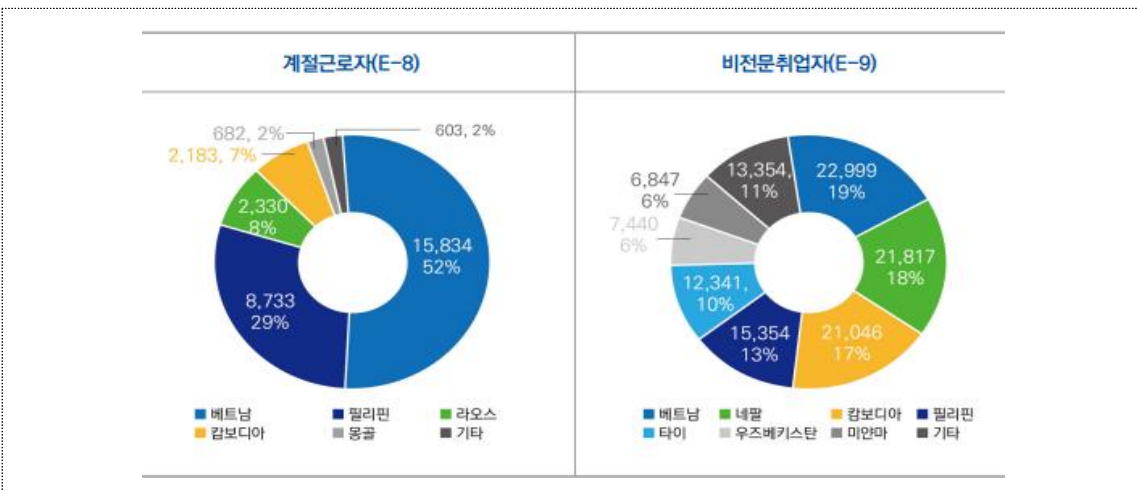
<지역별 농업분야 계절근로자(E-8) 추이(2023)>



<지역별 어업분야 계절근로자(E-8) 추이(2023)>



<계절근로 자격 입국자의 국적별 분포(2023년)>



자료: 이민정책연구원, 계절근로자 행정통계의 이해와 추이 분석(2021 ~ 2023), 2024.4.

4) 제도 주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무부 및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의 향후 정책 개선사항

법무부는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설계하고 주무부처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각 지자체에 시행하여 제도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개별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를 피해자로 하여 접수되었으나, 이 사안에서 확인되는 문제점들은 개별사안에 한정된 특수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점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가) 정책 주무부처 조정 필요성

2024. 5. 30.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I (정치·행정 분야)’(이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라 한다)에서는 ‘현재 외국인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그 예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과정에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 법무부(계절근로자제도), 농림축산식품부(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해양수산부(선원취업 제도) 등 다양한 부처가 각 부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이민 정책 수립·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역시 2024. 6. 20.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비전문인력의 경우 법무부·지자체(계절근로), 고용부(비전문취업·방문취업), 해수부(선원취업) 등이 각각 운영하면서 비자별로 인력규모를 결정하고, 도입·관리 등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 노동시장 전체관점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농촌 계절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지자체 수요 파악·신청, 법무부 승인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식품부의 수요전망 및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어려운 점, 도입과정에서 민간업체 개입으로 과도한 송출비용이 발생하여 외국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1인당 송출수수료(‘2023): (E-8 계절근로비자) \$2,000~5,000, (E-10 선원취업비자) \$5,500/불법 이탈보증금 요구 사례”가 있는 점, 고용허가제(E-9)는 공공 도입·선발 방식으로 송출비리 발생 우려가 적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와 국무조정실의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본질적으로 부족한 국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력 확보 방안이자 고용제도에 해당되고, 이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성, 인력 수요 파악 및 그에 따른 배정, 관리, 노동권 보호 및 침해 구제 등의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외국인과 관련하여서는 출입국·이민정책, 체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와 같이 노동력의 확보 및 관리가 주된 업무 내용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중앙행정기관이라 하기는 어렵다.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2024. 4. 3.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를 발족시켰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무부 지침상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사안을 조사해야 할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들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더해 이 제도로 입국하게 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증발급, 체류 연장 등의 관련 업무가 추가되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제 법무부가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와 출입국관서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업무를 안내하더라도 현장에서 준수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함에 업무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현재 외국인력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들어 법 적용을 우회하도록 예외를 두기 보다는 통합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외국인고용법 내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외국인 고용체계 분산을 막고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국무조정실 역시 6. 20. 향후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인력분야(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를 총괄·조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 전까지는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기초 산업들은 외국 인력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 정책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농·어업 노동력은 공동체 존립에 필수적인 식량 생산과 직결되는 요소인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에서의 노동력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주무 중앙행정기관을 조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 방향

☑ 수요자 중심 ☑ 통합적 관리 ☑ 공공 책임 강화를 통해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

인력정책 및 수급전망
비자별(단기) 대응
→ 업종별(중장기) 분석

인력규모 결정
비자별 상이·복잡
→ 통합·연계

도입·체류 관리
민간의존/관리체계 미흡
→ 공공 책임 강화

주요 내용

①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 등 부처 역할 강화

현행 비자별 수요에 단기대응 → 개선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 + 부처 인력정책 연계

계절근로 (E-8)	법무부	농축산업 (E-8, E-9)	농식농부
비전문취업 (E-9)	고용부	어업 (E-8, E-9, E-10)	해수부
선원취업 (E-10)	해수부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E-9)	고용부 + 관계부처

효과 인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 및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 수립

② 비전문인력의 총량관리 체계 구축

현행 비자별 인력관리 → 개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총량 조정



효과 노동시장 빈자리 해소 및 외국인력 도입의 종합적·탄력적 대응

③ 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현행 3개 정책심의기구 각각운영 → 개선 총리 주재 위원회로 일원화



효과 유사 정책간 연계·조정 및 효율적 위원회 운영 가능

④ 민간 도입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 강화

현행 민간업체 개입, 과도한 비용 발생 → 개선 민간업체 관리·감독 및 공공책임 강화

선원취업	✓ 민간업체 도입	선원취업	✓ 민간업체 관리·감독 강화 - 민간업체 자격기준, 평가·제재
계절근로	✓ 민간업체 개입	계절근로	✓ 도입전문기관 지정·MOU 체결지원 ✓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확대

효과 불합리한 송출비용 부담 및 인력 이탈 완화

⑤ (기타) 전문인력 유치, 숙련인력 양성, 유학생 활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인재 유치·양성·정착을 위한 비자유건 완화, 유학 졸업생 취업·연수 기회 확대 등